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우16304 /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) 4층 / 전화(031)243-5221,2 / 팩스(031)251-9770 / www.kgta.or.kr

문서번호 경기화협 제721호

시행일자 2020. 9. 2.

수 신 각회원

(경유)

참 조

선 결		지시	
접 수	일자 시간	결 재 · 공 람	
	번호		
처리과			
담당자			

제 목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(계절관리제)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등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환경부 교통환경과-3170(2020.8.14.)관련입니다.

3.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(계절관리제*)시행과 관련하여 올 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('20.12월~'21.3월)이 시작되기 전에 저공해조치(엔진교체, 저감장치 부착, 조기폐차)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,

* (계절관리제)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(12월~3월)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

4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수도권3개 시도의 계절관리제 운영 조례상 단속유예차량 및 유예기간,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, 각 회원님께서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수도권 3개 시도(서울·경기·인천)조례상 단속유예 차량 및 유예기간

구분	서울·인천	경기
저공해조치 차량	단속유예	단속유예
저감장치 미개발/장착불가 차량	'20.12월까지 단속유예	'21. 3월까지 단속유예
저공해조치 신청 차량	단속유예 없음 ('20.12.1부터 단속)	'21. 3월까지 단속유예

나.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

○ 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(<http://emissiongrade.mecar.or.kr>)” 홈페이지 접속

※ 검색포털(NAVER, DAUM 등)에서 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” 검색 후 접속 가능

○ “회원가입” 클릭 → 본인인증 → 일반회원 가입 → 로그인

○ 메인화면 하단의 “저공해 신청” 클릭

○ 본인인증 →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→ “저공해 신청” 클릭

붙임 : 환경부 공문(20.8.14)사본 1부. 끝.

※ 붙임 자료는 본 협회 홈페이지 “협회공문시달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이 사 장 고 달

